

현행	개정안
<p><b>제2조(구성)</b> ①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②위원은 전략지원실장, 교무처장, 교육지원처장, 학생대표 3명, 관련 전문가 1명 이상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③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하고, 부위원장은 교육지원처장으로 한다.</p> <p>④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</p> <p>⑤위원 중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이를 보충하여야 하며, 보선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</p> <p>⑥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.</p>	<p><b>제2조(구성)</b>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② 위원회는 교직원, 학생, 관련 전문가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자로 구성하되, 학부모 또는 동문을 포함할 수 있다.</p> <p>③ 학생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.</p> <p>④ 제2항의 교직원 위원은 본교 교무담당 부서장, 예산담당 부서(팀)장, 결산담당 부서장으로 한다.</p> <p>⑤ 제2항의 학생위원은 3인 이상으로 하되 총학생회 및 총동문회에서 추천받아 총장이 위촉한다.</p> <p>⑥ 제2항의 관련 전문가 위원은 1명으로 하되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의5제4항 각호에 따른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전문가로 총장이 위촉한다.</p> <p>⑦ 위원장은 교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, 부위원장은 결산담당 부서장으로 한다.</p> <p>⑧ 위원 및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.</p> <p>⑨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.</p>
<p><b>제4조(회의 및 의결)</b></p>	<p><b>제4조(회의 및 의결)</b> (신설)⑤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1주일 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등록금심의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하며, 대학 홈페이지에도 공지한다.</p>
<p><b>제5조(회의록)</b> 위원회는 회의의 일시, 장소, 발언요지, 결정사항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·보존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개하도록 한다. 다만, 개인 사생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.</p>	<p><b>제5조(회의록)</b> ①위원회는 회의의 일시, 장소, 발언요지, 결정사항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·보존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개하도록 한다. 다만,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,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</li> <li>2. 공개될 경우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</li> <li>3. 그 밖에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의결한 사항</li> <li>4. 회의록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않을 때에는 비공개사유 및 비공개기간을 공시하여야 하며, 비공개사유가 해소되거나 비공개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.</li> </ol> <p>②회의록은 회의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에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,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</li> <li>2. 공개될 경우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</li> <li>3. 그 밖에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의결한 사항</li> <li>4. 회의록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않을 때에는 비공개사유 및 비공개기간을 공시하여야 하며, 비공개사유가 해소되거나 비공개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.</li> </ol>